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사항 구체화〉

■ 이상식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8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사항 구체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26.
3. 회부연월일 : 2025.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

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

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Ⅲ. 검토의견

1.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사항 구체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공시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제75조(경영공시) 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5조(경영공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공시하여야-----.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결과 5. 제77조제3항1)에 따른 이행 명령 및 그 조치결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명령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77조제3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을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주무부 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조치하는 경우 그 이행 명령 및 그 조치결과 등은 대통령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²⁾되어 있는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 명령 및 그 조치결과 등을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경영공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고 및 중앙회의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새마을금고법」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주무부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타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의 경우는 경영공시 사항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및 금고·중앙회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경영개선조치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치결과’에 대한 공시사항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⁴⁾ 다만, 타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의 사례에 비추어 현행대로 공시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

제9조(경영공시)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은행업감독규정」(고시)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한편, 현행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상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과 같이 경영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는 의견을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 외부감사, 경영평가결과, 행안부·중앙회·회원청구에 의한 검사·조치결과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